

# 조례안 심사보고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

# 목 차

1	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.....	1
2	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.....	4
3	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례안 .....	7
4	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.....	10

# 거창군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4. 2. 20.

나. 발 의 자 : 신중양 의원 대표발의

(신중양, 이홍희, 박수자, 김홍섭, 표주숙, 신재화,  
김향란, 최준규, 이재운, 신미정, 김혜숙)

다. 회부일자 : 2024. 2. 20.

라. 상정일자 :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
(2024. 3. 04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신중양 의원)

- 「건축물관리법」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, 적용범위 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정기점검·긴급점검·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(안 제4조 ~ 제6조)

- 다.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지원(안 제7조)
- 라. 안전진단 대상(안 제8조)
- 마.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(안 제9조)
- 바. 건축물 해체신고·허가 대상(안 제10조 ~ 제11조)
- 사. 현장점검 및 대행 수수료(안 제12조 ~ 제13조)
- 아.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(안 제14조)
- 자.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(안 제15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물관리법」 제15조,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 제10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
- 다. 합 의 : 도시건축과
- 라.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4. 2. 8. ~ 2024. 2. 15.
  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 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 - 3) 비용추계서 : 붙임
  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조례안은 건축물 정기 점검 등의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건축물의 해체, 빈 건축물의 정비 등 「건축물관리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건축물 생애기간 동안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로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,

-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**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**

**7. 토론요지 : 없음**

**8. 수정안 요지 : 없음**

**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

**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#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4. 2. 20.

나. 발 의 자 :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

(김향란, 이홍희, 박수자, 김홍섭, 표주숙, 신재화,  
신중양, 최준규, 이재운, 신미정, 김혜숙)

다. 회부일자 : 2024. 2. 20.

라. 상정일자 :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
(2024. 3. 04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향란 의원)

○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거창군에 유입 하는 인구에 보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개정된 조례에 맞게 제명을 ‘빈집정비’에서 ‘빈집정비 및 활용’으로 변경함(안 제명)

- 나. 조례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함(안 제1조)
- 다.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- 라. 빈집정비의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- 마.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4조, 제64조2, 제67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도시건축과, 행복농촌과
- 라.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4. 2. 15 ~ 2024. 2. 19.
  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 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 - 3) 비용추계서 : 붙임
  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개정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빈집정비 비용지원의 범위를 빈집 정비 후 군의 활용에 동의할 경우를 추가하고 빈집의 활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빈집 정비와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,
- 또한, 용어를 정비하여 그 뜻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



-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**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**

**7. 토론요지 : 없음**

**8. 수정안 요지 : 없음**

**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

**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# 거창군 학교우유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4. 2. 20.

나. 발 의 자 :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

(김향란, 이홍희, 박수자, 김홍섭, 표주숙, 신재화,  
신중양, 최준규, 이재운, 신미정, 김혜숙)

다. 회부일자 : 2024. 2. 20.

라. 상정일자 :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
(2024. 3. 04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향란 의원)

○ 이 조례는 거창군 학교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, 지역 우유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학교우유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- 다. 효율적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라.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학교급식법」 제3조, 제8조, 제9조  
「낙농진흥법」 제3조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조, 「축산법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
- 다. 합 의 : 농업축산과
- 라.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4. 2. 13. ~ 2024. 2. 19.
  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 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 - 3) 비용추계서 : 붙임
  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정부에서는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 및 우유 음용습관 조기 형성을 위해 학교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가구의 학생 등 저소득층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음.

- 본 조례안은 그동안 무상급식으로 지원되었던 다자녀가구 학생들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학생들에게 균비 무상우유 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**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**

**7. 토론요지 : 없음**

**8. 수정안 요지 : 없음**

**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

**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# 『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』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4. 2. 16. /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24. 2. 20.
- 다. 상정일자 :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
(2024. 3. 04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농업기술과장)

- 거창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기준가격에서 도매 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지원하여,
- 군 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으로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, 책무를 정함(안 제1조~제3조)
  - 1) 차액 :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기준 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

- 나. 차액 지원, 지원 및 제외 대상, 신청을 정함(안 제4조~제6조)
  - 1) 차액 지원 대상 :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
- 다.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정함(안 제7조~제15조)
  - 1) 기능 : 지원하는 주요 농산물 품목 및 지원범위, 기준가격 결정, 품목별 차액 지급 기준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2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·제28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- 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사업 발생시 추경 확보예정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
- 라. 기타사항
  - 1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 - 2) 입법예고
    - 가) 예고기간 : 2024. 1. 24.~2. 14.
  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 - 3) 비용추계서 : 붙임
  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##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량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과 가격등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농업 경영비 증가로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농가소득을 보전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에

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- 주요내용<sup>1)</sup>을 살펴보면 주요 농산물 중 사과, 딸기, 포도, 양파, 감자의 경우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[최근 5년간 주 출하기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상품(上品) 기준의 평년가격] 80% 이하로 형성된 경우, 기준가격과 도매시장 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,
- 주요 농산물 중 벼의 경우 1등급 기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기준 수매가격[최근 5년간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 매입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년가격]의 85% 이하로 형성될 경우, 공공비축미 1등 기준수매가격에서 농협자체 수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임.
- 지원 신청을 하려면 계통출하 증명서류 및 농협 자체수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농가별 최고 한도액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음.
- 조례의 제안이유와 내용 검토 결과 거창군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,

---

1)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안) 제4조(기준가격 결정 및 공고) ①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"기준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 
1. 최근 5년간 주 출하기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상품(上品) 기준의 평년가격. 다만, 벼는 최근 5년간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 매입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년가격이며 찰벼는 최근 5년간 농협자체 매입 기준 매입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년가격  
2. 농업진흥청의 농산물 소득자료, 경남농협이 산정하는 유통비, 그 밖에 현장사항 반영 등  
② 군수는 매년 기준가격을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.

○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○ 첨부 의견으로, 거창군은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장제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을 1) 농가수익 보장 2) 농가조직 육성 3) 정부정책 연계 4)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설정하였는데,<sup>2)</sup>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정책과 현장 및 품목중심의 추진을 위해서는 품목선정, 사업방식, 주 출하시기, 기간, 지원기준, 재원방안, 추진체계, 위원회 구성 등 항목별 내용이 충실하게 진행되어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,

○ 그 중에서도 사업의 목적과 효율성,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재원과 관련하여, 유사정책을 시행중인 지자체 65개 중 43개 지자체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이라는 특정분야의 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정과 탄력적인 운영 및 자금지원을 위한 목적에 비추어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,<sup>3)</sup>

○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거나 중간에 정책을 변경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, 2024년 벼(찰벼), 사과, 딸기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시범사업 계획인데 품목 관리 및 기준 적용, 단계별 확대 추진 농가 및 농민단체와 충분한 사전 설명이 병행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임.

○ 또한, 타 지자체의 예를 보면 지역 농축협, 계통출하조직이 기금조성을 위해 출연하고 있는 점은 모범사례로 보여지며 거창군은 한우와 양돈이 규모화되어 있고 계통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주요 농산물과 함께 한우, 양돈의 가격안정 지원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.

2) 거창군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수립 용역(2023.09.) 자료 중, 기준가격보장제 정책 기본방향(P202)

3) 거창군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수립 용역(2023.09.) 자료 중, 기준가격 차액 재원 검토 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 형태별 특징 및 장단점(P124)



6. **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**

7. **토론요지 : 없음**

8. **수정안 요지 : 없음**

9. **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

10. **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11. **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